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비임상시험관리기준」 일부개정고시 알림

1.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, 지정요건 및 관리기준 상세내용 마련을 위해 「비임상시험관리기준」 (식약처 고시)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동 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 (<http://mfds.go.kr> > 법령·자료 > 제·개정고시 등)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「비임상시험관리기준」 일부개정고시.
2. 「비임상시험관리기준」 전문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국무조정실장, 보건복지부장관,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, 17개 시도지사체장, 본부(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전부서), 6개 지방청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,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,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, 임상시험실시기관장



주무관 **조정은** 사무관 **김희선** 임상제도과장 **이남희** 전결 2018. 11. 21.

협조자

시행 임상제도과-5678

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(식품의약품안전처) 임상제도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1864 팩스번호 043-719-1850 / eatherside@hanmail.net / 대국민 공개